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회계감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년 7월



구 리 시

과 업 지 시 서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인창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회계감사 용역

2.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로 한다.

※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목적

○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조합에서 납부·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과업의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회계감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감사인) 및 제9조

5. 과업의 내용

1) 감사대상 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2018. 4.) ~ 준공인가 신청일(2026. 3.)

2) 과업의 범위

- 재무제표감사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기타 관련서류 등 조합의 모든 수입 · 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3) 최종보고: 계약만료일까지 최종성과품 납품

- 감사의견 표기(적정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II.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약정서에 따라 계약(약정) 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시와 착수일을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 신고, 용역 예정 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감사와 관련한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관련 법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우리 시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감독 및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2조 제3항)
4. 수급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이나 주요사항 결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우리시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의견에 따른다.

III. 보안대책

1.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제반사실에 대해 우리 시의 승인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 대표자(현장대리인) 및 과업참여자 각 개인별 보안각서를 과업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IV. 과업 보고 및 성과품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이행한다.
2. 성과품은 감사보고서(A₄, 210mm×297mm) 5부 및 USB 2개를 제작하여 제출한다.